병원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(BCP) 지침(개정)

2022. 2. 24.

중앙사고수습본부

◆ 본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(BCP)에 규정한 내용 외의 기준은 「코로나-19 대응 지침(의료기관용)」 등 중앙사고수습본부,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을 따름

◆ 향후 코로나 발생 상황 등에 따라 단계설정, 의료인력 재개 기준 등 주요내용이 변경 될수 있으며, 이 경우 변경 지침을 따름

◆ 동 지침을 기본으로 「핵심업무지속을 위한 업무연속성 계획(BCP) 작성 가이드라인」에 따라 기관별 BCP 마련

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(BCP) 지침 개정전후대비표

<table>
<tr><th>쪽</th><th>현행</th><th>수정</th></tr>
<tr><td>1</td><td>
□ (단계)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고려, 단계를 구분하여 대응
<table>
<tr><th>주요지표</th><th>1단계 (대비)</th><th>2단계 (대응)</th><th>3단계 (위기)</th></tr>
<tr><td>일일 확진자수*</td><td>7천명 이상 ~ 3만명 미만</td><td>3만명 이상 ~ 5만명 미만</td><td>5만명 이상</td></tr>
<tr><td>의료인력 격리(감염) 비율**</td><td>자체 설정</td><td>자체 설정</td><td>자체 설정</td></tr>
</table>
* '일일 확진자수' 기준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

** 병원별로 '의료인력 격리(감염) 비율'을 자체 기준으로 설정 가능('일일 확진자수' 기준과 자체 기준을 모두 충족시 해당 단계에 따라 대응)
</td><td>
□ (단계)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고려, 단계를 구분하여 대응
<table>
<tr><th>주요지표</th><th>1단계 (대비)</th><th>2단계 (대응)</th><th>3단계 (위기)</th></tr>
<tr><td>일일 확진자수*</td><td>7천명 이상 ~ 3만명 미만</td><td>3만명 이상 ~ 5만명 미만</td><td>5만명 이상</td></tr>
<tr><td>의료인력 격리(감염) 비율**</td><td>자체 설정</td><td>자체 설정</td><td>자체 설정</td></tr>
</table>
* '일일 확진자 수' 기준은 확진자 1인당 접촉자 8~10명을 가정한 수치로 추후 변경 예정이며, 현 시점(2.24.)에서 3단계 적용 가능

** 병원별로 '의료인력 격리(감염) 비율'을 자체 기준으로 설정 가능('일일 확진자수' 기준과 자체 기준을 모두 충족시 해당 단계에 따라 대응)
</td></tr>
<tr><td>4</td><td>
○ (근무허용) 확진자, 접촉자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근무 허용

- 확진자(무증상 또는 경증)의 경우 3단계부터 3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근무*가능(접종완료자에 한함)

* K-94 마스크 착용하며 근무(단,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지정된 장소 이외에 취식 금지)

<확진자 격리기간 및 근무재개 기준>
(기준 : 증상발생일)
<table>
<tr><th>중증도</th><th>1단계</th><th>2단계</th><th>3단계</th></tr>
<tr><td>무증상 또는 경증</td><td>7일 격리 후 근무 가능</td><td>5일 격리 후 근무 가능</td><td>3일 격리 후 신속검사 음성시 근무 가능 (접종완료자에 한함)</td></tr>
<tr><td>중증</td><td colspan="3">최대 20일 격리</td></tr>
</table>
- 접촉자의 경우, ▲ 예방접종 완료자는 1단계부터 근무 가능 ▲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3단계부터 근무*가능(매일 신속항원)
* K-94 마스크 착용하며 근무(단,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지정된 장소 이외에 취식 금지)

<접촉자 격리기간 및 근무재개 기준>
(기준 : 접촉일)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1단계</th><th>2단계</th><th>3단계</th></tr>
<tr><td>예방접종 완료자*</td><td colspan="3">격리 없이 근무 가능</td></tr>
<tr><td>예방접종 미완료자</td><td>7일 격리 후 근무 가능</td><td>5일 격리 후 근무 가능</td><td>격리 없이 매일 신속항원검사 후 근무 가능</td></tr>
</table>
* 3차 접종후 14일 경과한 자
</td><td>
○ (근무허용) 확진자, 접촉자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근무 허용

- 확진자(무증상 또는 경증)의 경우 3단계부터 3일 격리 후 무증상자 경우 근무*,**가능(접종완료자에 한함)

* K-94 마스크 착용하며 근무(단,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지정된 장소 이외에 취식 금지)
** 필요 시 음성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권고

<확진자 격리기간 및 근무재개 기준>
(기준 : 검체 채취일)
<table>
<tr><th>중증도</th><th>1단계</th><th>2단계</th><th>3단계</th></tr>
<tr><td>무증상 또는 경증</td><td>7일 격리 후 근무 가능</td><td>5일 격리 후 근무 가능</td><td>3일 격리 후 근무 가능 (무증상 접종완료자에 한함)</td></tr>
<tr><td>중증</td><td colspan="3">최대 20일 격리</td></tr>
</table>
- 접촉자의 경우, ▲ 예방접종 완료자는 1단계부터 근무 가능 ▲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3단계부터 무증상 경우 근무*,**가능
* K-94 마스크 착용하며 근무(단,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지정된 장소 이외에 취식 금지)
** 필요 시 음성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권고

<접촉자 격리기간 및 근무재개 기준>
(기준 : 검사일)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1단계</th><th>2단계</th><th>3단계</th></tr>
<tr><td>예방접종 완료자*</td><td colspan="3">격리 없이 근무 가능</td></tr>
<tr><td>예방접종 미완료자</td><td>7일 격리 후 근무 가능</td><td>5일 격리 후 근무 가능</td><td>격리 없이 근무 가능**</td></tr>
</table>
* 3차 접종후 14일 경과한 자
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쪽</th><th>현행</th><th>수정</th></tr>
<tr><td>5</td><td>3 대상자 선정 및 시행 절차
– 신 설 –</td><td>3 대상자 선정 및 시행 절차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관계기간</th><th>단계별 수행사항</th></tr>
<tr><td>1. 분야 선정</td><td>복지부, 질병청 의료기관,</td><td>- 방역당국과 소관부처 사전 협의를 통한 의료분야 필수인력 격리기간 단축 합의
- 질병청 → 보건소로 해당 분야 통보 (지자체 지침 반영 등)
- 소관부처 → 기관 통보</td></tr>
<tr><td>2. 명단 작성</td><td>의료기관</td><td>- 해당 분야(의료)기관의 장은, 旣 수립 BCP 중 격리기간 예외조항 적용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정하여 기관 내부 결재 및 전자문서 보관</td></tr>
<tr><td>3. BCP 가동</td><td>의료기관</td><td>- 의료기관의 장은 BCP 기준 시행에 근거, 자체 판단하에 의료인력 기간 단축 시행
* 업무우선순위 조정, 대체인력 활용 등 우선고려</td></tr>
<tr><td>4. 사후 통보</td><td>관할 보건소, 필요 시 소관부처</td><td>- 의료기관은 보건소 및 소관 부처에 별도 통보없이*, 즉시 시행
* 격리예외 적용 명단에 등록된 인력에 한함
- 보건소는 별도 격리기간 재설정 통보 불요
- 격리예외 적용 등록 대상 근무자의 출근을 위한 격리이탈 시 책임 소지 미적용</td></tr>
<tr><td>5. 평가</td><td>보건소 의료기관 소관부처</td><td>- 필요 시 보건소 및 소관부처는 격리예외 명단 및 근무일수 등 BCP 관련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6</td><td>4 격리예외적용자 출근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
– 신 설 –</td><td>4 격리예외적용자 출근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
※ 의료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감염예방을 위한 [1]내부수칙을 마련하고, 격리예외적용대상자에게 [2]사전에 충분한 교육 및 홍보에 철저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격리기간 중 허용되는 외부 활동은 직장 활동만 가능(집-직장), 다른 개인활동 불허
○ 격리면제에 따른 외부 활동 중 면역저하자, 노인, 미접종자 등 고위험 환자 전파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시행
○ 당초 지정된 격리기간까지는 마스크(KF-94) 철저히 착용
○ 무증상 시 출근 가능
○ 직장 동료들과 접촉을 최소화하며, 함께 식사 등 마스크 미착용 상황을 최대한 피할 것
○ 긴급상황 외에는 당직 근무는 가급적 제외하며, 필요시 별도의 당직실 사용(사용 후 소독 및 환기 철저) 권고
○ 기관 내 별도의 휴식 공간 마련 권고</td></tr>
</table>

1 개요

□ (배경) 오미크론 확신 시 **병원 내 의료인 감염 증가** 예상, **진료 기능 유지**를 위한 BCP(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연속성계획) 마련 필요

○ **의료기관별**로 **비상 시 필수 진료기능 유지**를 위한 자체 BCP를 수립할 수 있도록 **의료기관 기본 BCP** 제공

□ (단계) **코로나19 확진자 수**를 고려, **단계를 구분**하여 **대응**

주요지표	1단계 (대비)	2단계 (대응)	3단계 (위기)
일일 확진자수*	7천명 이상 ~ 3만명 미만	3만명 이상 ~ 5만명 미만	5만명 이상
의료인력 격리(감염) 비율**	자체 설정	자체 설정	자체 설정

* '일일 확진자 수' 기준은 확진자 1인당 접촉자 8~10명을 가정한 수치로 추후 변경 예정이며, 현 시점(2.24.)에서 3단계 적용 가능

** **병원별로** '의료인력 격리(감염) 비율'을 **자체 기준으로 설정 가능**('일일 확진자수' 기준과 자체 기준을 **모두 충족시 해당 단계에 따라 대응**)

○ **(1단계 : 대비단계) 확진자 日 7천명 이상 발생 시, 단기간 내에 확진자 급증** 가능, **의료기관 자체 BCP 시행 점검·준비**

○ **(2단계 : 대응단계) 의료기관 자체 BCP**에 따른 **분야별 추진 계획 이행 체계 전환**

○ **(3단계 : 위기단계)** 의료기관 **진료기능 유지**를 위해 **완화된 근무 기준, 진료 우선순위 적용** 등 기관 **핵심기능 위주** 본격 실행

□ (관리조직) 의료기관별로 **자체 BCP 수립, 비상 체계전환 준비, 이행** 등을 **체계적으로 관리** 할 수 있도록 **별도 팀**을 **구성**

<단계별 추진계획>

구분	1단계 (대비)	2단계 (대응)	3단계 (위기)
① 조직	• BCP 관리조직 구성	• BCP 관리조직 운영	
② 진료분야	• 자체 BCP 수립 비상체계 전환 준비	• 진료 우선순위 적용 • 필수기능외 업무 축소	• 외래 비대면 진료 • 코로나 병동 확대
③ 의료인력		• 비상인력 체계 전환	• 확진자(무증상 or 경증) 및 접촉자 근무허용 (근무전 신속항원) • 대체인력 투입
④ 물품	• 방호물품·의료용품 비축	• 우선순위 사용	• 우선순위 사용
⑤ 감염	• 4종 보호세트 착용		

2 분야별 계획

1 필수기능

○ (진료) 중증, 희귀난치, 응급, 분만 등 **진료 우선순위**를 두되 **의료기관별 전문 분야**를 고려하여 설정

○ (진료외)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분야별 **핵심 업무**를 설정

<필수업무 설정 방법 예시> ※ BCP 가이드라인 참고

○ **허용 가능한 중단시간***(MPTD : Maximum Period of Tolerable Disruption)을 **산정**하여 **단계별 필수 업무·기능** 설정

* 사람(직원, 환자, 방문자) 또는 운영에 돌이킬 수 없는 **피해를 입히지 않고 서비스 또는 기능을 중단할 수 있는 최대 시간**(시간 또는 일)

필수적인 활동 클래스 0 **MPTD : 허용 불가**	높은 우선순위 활동 클래스 A **MPTD : 24시간**	중간 우선순위 활동 클래스 B **MPTD : 48시간**	낮은 우선순위 활동 클래스 C **MPTD : 72시간 이상**
• **중단 불가*** * 어떤 외부 위험 요인 등에도 업무 지속 유지 반드시 필요 • 즉시 수행 불가 시, 인명 손실 등 초래 • 국민 보건서비스 등 심각한 영향	• **단시간 내에 업무 중단 가능** • 24시간 이내에 업무 재가동 불가 시 치료 중단 및 인프라 손실 발생	• **24~48시간 사이 중단 가능 업무** • 기간 내 업무 유지 곤란 시 환자 상태 악화 및 인프라 손실 발생 가능	• **72시간 이상 지연 가능 업무** • 정상 업무 복구 및 추가 중단 완화를 위한 업무
업무나열	*업무나열*	*업무나열*	*업무나열*
업무나열	*업무나열*	*업무나열*	*업무나열*

2 진료분야

○ (외래) 3단계부터 **비대면 진료 전환**

※ 코로나19 대응 관련 **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** 준용

【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】 <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-889호>

○ **의사의 판단**에 따라 **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**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**비대면 진료**를 받을 수 있도록 **한시적으로 허용**

○ (취지)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

○ **(내용)** 의사의 **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**에는 **전화 상담·처방 실시**

○ **(대상)**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국 의료기관

-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만 비대면 진료 가능

○ **(적용 기간)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**의 위기경보 발령 **기간** 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3 공포 시행일 ('20.12.15)부터 적용)

○ **(적용 범위) 유·무선 전화, 화상통신**을 **활용**한 **상담 및 처방**

*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,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

【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】 <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-780호>

○ 마약류*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** **처방 제한**

* 마약류 : 「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8조제2항,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·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

** 오남용 우려 의약품 : 「오·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」(식약처) 지정 품목(23개 품목(성분) 함유제제)

○ **(입원)** 확진자 급증으로 **음압병동 입원이 불가능**할 경우, **3단계**부터 **일반병동 일부**를 **코로나 병동**으로 활용

→ (음압시설) **음압시설 구축 권장, 음압시설 확보가 어렵고 환자가 급증**하는 등 **불가피한 경우** 일반병동과 **공간분리하여 병동 운영** 가능

3 의료인력 분야

의료인력의 특수성에 따라 **단기간 교육 등**으로 **대체인력을 확보**하기는 **사실상 불가능**, 인력 운영계획에 따라 **기관 보유인력 최대한 활용**

○ **(인력계획)** 단계별 의료기관 자체 **비상 인력 운영계획**을 수립

- 자가격리 등으로 **진료 공백 발생시 1, 2차 직무 대행자 지정**

- 불요불급한 업무 인력을 **필수기능 업무**로 **배치** 등

※ 간호업무의 공백 발생 : 간호행정 업무 담당자를 진료업무에 한시 배치 등

○ (근무허용) 확진자, 접촉자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근무 허용

- 확진자(무증상 또는 경증)의 경우 3단계부터 3일 격리 후 무증상자 경우 근무*,**가능(접종완료자에 한함)

* K-94 마스크 착용하며 근무(단,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지정된 장소 이외에 취식 금지)

** 필요 시 음성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권고

<확진자 격리기간 및 근무재개 기준>

(기준 : 검체 채취일)

중증도	1단계	2단계	3단계
무증상 또는 경증	7일 격리 후 근무 가능	5일 격리 후 근무 가능	**3일 격리 후 근무 가능** (무증상 접종완료자에 한함)
중증	최대 20일 격리		

- 접촉자의 경우, ▲ 예방접종 완료자는 1단계부터 근무 가능 ▲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3단계부터 무증상 경우 근무*,**가능

* K-94 마스크 착용하며 근무(단,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지정된 장소 이외에 취식 금지)

** 필요 시 음성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권고

<접촉자 격리기간 및 근무재개 기준>

(기준 : 검사일)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
예방접종 완료자*	격리 없이 근무 가능		
예방접종 미완료자	7일 격리 후 근무 가능	5일 격리 후 근무 가능	**격리 없이 근무 가능****

* 3차 접종후 14일 경과한 자

○ (대체인력) 3단계 전환시 의료기관 자체 신규채용 인력 긴급 투입, 군의관·공보의 투입, 간호인력 파견 등을 통한 의료인력 긴급 수급

4 기타

○ (물품확보) 물품 공급 대란 대비, 4~6주 분의 방호·의료 물품 비치, 우선 순위에 따라 물품 배정

○ (장비·물품사용) 3단계 전환시, 진료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장비 및 의료용품 사용

○ (감염관리) 4종 보호세트* 착용

* KF94 또는 N95, 장갑, 일회용 방수성긴팔가운, 고글/안면보호구

3 대상자 선정 및 시행절차

구분	관계기관	단계별 수행사항
1. 분야선정	복지부, 질병청	- 방역당국과 소관부처 사전 협의를 통한 의료분야 필수인력 격리기간 단축 합의 - **질병청 → 보건소로 해당 분야 및 BCP 시행 절차 등 통보**(지자체 지침 반영 등) - **소관부처 → 기관 통보**
2. 명단 작성	의료기관	- 해당 분야(의료)기관의 장은, 旣 수립 BCP 중 **격리기간 예외조항 적용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** 정하여 기관 **내부 결재 및 전자문서 보관**
3. BCP 가동	의료기관	- 의료기관의 장은 BCP 기준 시행에 근거, **자체 판단하에 의료인력 기간 단축 시행** * 업무우선순위 조정, 대체인력 활용 등 우선고려
4. 격리기간 단축 실행	의료기관	- **의료기관은** 보건소 및 소관 부처에 **별도 통보 없이 즉시 시행*** * **격리예외 적용 명단에 등록된 인력에 한함** - **보건소**는 별도 격리기간 **재설정 통보 불요** - 격리예외 적용 등록 대상 근무자의 **출근을 위한 격리이탈 시 책임 소지 미적용**
5. 평가	보건소 소관부처	- 필요 시 보건소 및 소관부처는 격리예외명단 및 근무일수 등 BCP 관련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

4 격리예외적용자 근무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

※ **의료기관에서는**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**감염예방을 위한** [1]**내부수칙**을 **마련하고**, 격리예외적용대상자에게 [2]**사전에 충분한 교육 및 홍보에 철저히**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격리기간 중 허용되는 **외부 활동은 직장 활동만 가능(집-직장)**, 다른 개인활동 불허

○ 격리면제에 따른 외부 활동 중 면역저하자, 노인, 미접종자 등 고위험 환자 전파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시행

○ 당초 지정된 **격리기간까지는 마스크(KF-94) 철저히** 착용

○ 무증상 시 출근 가능

○ 직장 동료들과 접촉을 최소화하며, 함께 식사 등 **마스크 미착용 상황을 최대한 피할 것**

○ 긴급상황 외에는 당직 근무는 가급적 제외하며, 필요시 별도의 당직실 사용(사용 후 소독 및 환기 철저) 권고

○ 기관 내 **별도의 휴식** 공간 마련 권고

참고	의료기관 자체 BCP 마련을 위한 체크 리스트

<의료기관 BCP 체크리스트>

구분	완료	진행중	시작전
1. 필수 기능설정			
○ 진료, 진료외 분야별 핵심기능을 고려 단계별 업무 설정			
2. 조직 운영			
○ BCP 담당 조직 구성			
○ 분야별 담당자, 책임자 지정			
○ 비상시 신속한 보고체계 및 의사결정 구조			
○ 내부 및 외부 비상연락망(관할 보건소, 유관 기관) 구축			
○ BCP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			
○ BCP 프로세스 등에 대한 직원 교육			
○ BCP 모의훈련 실시			
3. 진료분야			
○ 진료 우선순위 설정			
○ 외래・입원, 일반・코로나 환자 현황 확인 체계			
○ 외래 비대면 진료 전환시 진료체계 구축 (유・무선 전화, 화상통신을 이용한 진료・처방 등)			
○ 접촉자, 확진자 관리 체계 (PCR 검사 결과, 일일 신속항원검사 결과 등)			
4. 인력운영			
○ 직무 대행자 지정(1차, 2차)			
○ 대체 인력 확보 계획			
○ 근무기간 동안 일일 건강상태 관리			
○ 접촉자로 분류된 근무자에 대한 감염 관리			
5. 물품관리 등			
○ 비상 방호물품 구비, 확보 주기 등 비축 계획			
○ 환자 급증에 따른 필수 의료용품 등 비축 계획			
○ 장비 이용 폭증, 의료용품 부족지 우선순위 지정			
○ 단계별 의료기관내 의료진, 환자, 보호자 감염관리 계획			

※ 동 체크리스트는 BCP 마련시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기관별 사정에 따라 추가・제외 가능